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9. 15.(수) 10:20

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원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원
형태근 위원
양문석 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주)CJ오쇼핑의 법인분할에 관한 건 - (2010-55-231)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CJ오쇼핑의 변경(법인분할)승인 신청 건과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 (주)온미디어 계열 4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주)CJ오쇼핑의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승인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분할법인(존속법인)	신설법인
회사명	(주)CJ오쇼핑	(주)CJ오쇼핑	(주)오미디어홀딩스
자본금 (분할비율)	551억원 (100%)	303억원 (55%)	248억원 (45%)

② (주)온미디어 계열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주)한국케이블티브이전남동부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영동방송		
(주)수성케이블방송	(주)CJ오쇼핑	(주)오미디어홀딩스
(주)동구케이블방송		

2)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0-55-23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추가 검토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3)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0-55-233)

○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34차 위원회('10. 6. 10) 보고후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고지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및 별표)

* 필수고지사항 : ①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②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을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평균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이용자 이의 저해행위로 규정 (안 제3조)

③ 고시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법정 '시정명령' 부과 전에 '시정권고'를 통한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5조, 관련 사업자 의견 반영 내용)

④ 규제대상 서비스 가운데 법적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삭제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반영 내용)

4)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 - (2010-55-234)

o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동안의 번호정책과 변화된 정책여건, 공청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을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방안'(제3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 수정 내용

수정전	수정후
KT 외 사업자가 2G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추후 결정·시행	차기 2G를 종료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기간 추가

o 주요 내용

[1] 번호통합 정책방안 개요

① 010 번호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번호통합은 '최종적으로 2G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2018년 예상)'에 완료함

② 아울러, 2011년 1월 1일부터 01X이용자로 하여금 3G 전환 시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세부시행 방안

【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 】

① 개요

- 2G서비스 종료로 인한 01X이용자의 쓸림을 완화하기 위해 01X 이용자의 3G로의 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3G에서의 01X번호 사용기간 이내에 반드시 010 번호로 변경토록 함

② 세부내용

- **(시행원칙)** 이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시행토록 하되,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을 허용

※ 시행일 전까지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자별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

·KT의 2G 종료를 기준으로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기간 : 3년(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허용)

▶대상 : SKT, KT, LGU+

·차기에 2G를 종료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기간 : 2년(차기 2G 종료가 결정되는 시점에 시행)

▶대상 : SKT, LGU+

- **(이용조건)** 2G에서 3G로 번호이동한 01X 이용자는 재이동(3G→3G, 3G→2G) 할 수 없도록 하며, 이용기간 종료 전에는 010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

- **(사업자 의무)** 이용자에 대한 번호이동 조건의 고지, 한시적 기간 경과후 변경될 010번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하며, 010번호로의 변경과 원활한 통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01X번호 표시서비스 시행계획】

① 개요

- 01X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전화걸 때 상대방에게 변경 전 01X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01X번호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무료로 제공

② 세부내용

- **(시행 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각 사업자별로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도록 함
- **(01X번호 표시 범위)** 음성 및 문자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
· 기타 부가서비스에 대한 01X번호 표시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이용 기간)** 01X 이용자는 010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2G종료(2018년경)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음
- **(서비스 이용의 제한)** 2G 서비스 이용 중 타사업자의 3G 서비스로 전환(신규 가입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01X 번호 표시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 **(사업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고지, 01X번호의 회수,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에는 변경된 010번호 안내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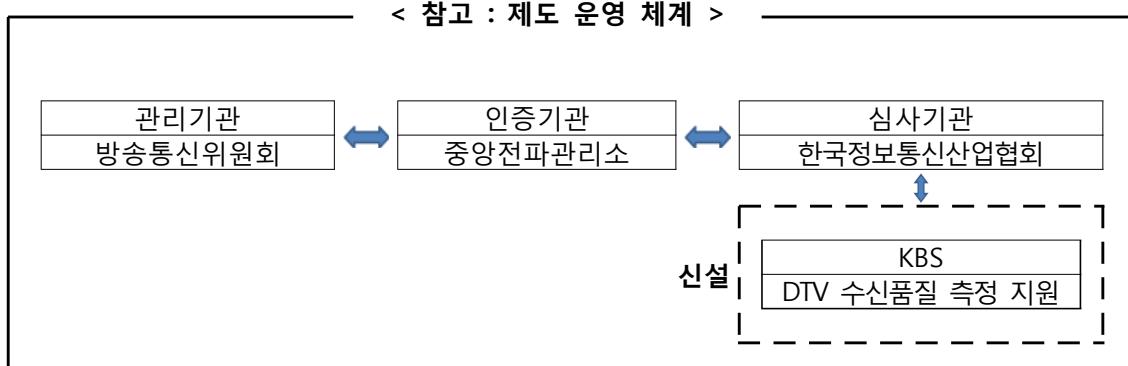
5)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0-55-235)

- o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동 지침을 디지털 방송 수신설비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등 추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
-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 시 재인증
 - ② DTV 수신 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여 “특등급” 인증 엠블럼 개정

변경전	변경후
	

③ 인증제도 심사체계 개선

- KBS가 DTV 수신품질 측정 지원 및 방송 수신환경 개선작업을 병행하도록 함



사. 보고사항

1)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 현 인터넷주소(IPv4) 할당 종료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마련된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안)」을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IPv6 전환 상용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 IPv6 기반 상용 웹서비스(DNS, 메일), IPTV 서비스(IPTV기반 웹접속, 게임몰 등), 3G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여 이용자 확대 및 관련 장비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확립

·금년 중 분야별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11년부터 본격적 상용화 추진

- IPv4 신규할당 종료에 따른 IP 주소 할당 우선순위 수립

·인터넷서비스별 중요도,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IPv6전환 추진

- ▶가입자 증가가 감소하는 전화선기반 데이터통신망, 전력제어통신 등 안정성이 요구되는 국가 주요통신망은 당분간 IPv4 유지
- ▶스마트모바일 등 신규 IP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IPv4/IPv6를 혼용
- ▶새로 구축되는 LTE* 등 차세대 이동통신망은 초기부터 IPv6 체계로 구축

* LTE(Long Term Evolution) : 3세대 이동통신(3G)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로 3G와 4G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술

② IPv6 전환 인식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 **(IPv4 할당종료시점(Flag Month) 선포)** 국내 IPv4 신규할당 중지 시점을 '11. 6월로 선포'하고 IPv6 전환 서비스 분야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 국제 인터넷주소(IP) 할당기관인 ICANN의 IPv4 신규할당 종료시점('11. 6월)이후에는 우리나라로 정상적인 IPv4 할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1. 6월을 IPv4 할당 종료 시점인 Flag Month로 선포
- **(IPv6 전환 취약계층 등 지원체계 강화)** IPv6 전환 취약계층(중소ISP, 콘텐츠사업자 등) 대상 기술컨설팅, 테스트 지원 등 종합지원체계 강화
 - (IPv6 전환 전문인력 양성)** IPv6 도입을 위한 수요자의 수준별(기초실무, 네트워크관리, IPv6 적용 등) 기술교육 실시('13년까지 약 2,400명)

③ IPv6 추진체계 및 점검 강화

- IPv6 전환 추진체계 강화 : 'IPv6 전환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 그간 ISP 백본망 위주의 IPv6 전환 준비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ISP 중심으로 "IPv6 전환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해 왔으나
 - ▶인터넷서비스 전주기(全週期 : 네트워크-응용서비스)에 IPv6를 적용하기 위해 포털, 장비제조사, CATV사업자, 보안업체 등을 참여시켜 IPv6 전환 확산, 홍보 등을 강화
 -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점검체계 강화
 - IPv6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SP, 서비스제공자(포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이용자(민간·공공기관), 제조사(HW·SW) 등 분야별로 IPv6 목표치 설정 및 점검관리
 - ISP의 경우 IPv6 전환을 '13년까지 백본망 100%, 가입자망 45%까지 전환하고, IPv6기반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활성화 및 6NGIX* 연동을 강화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비즈니스 이용기관 관련
 -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포털,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100대 웹사이트 (일 평균 방문자 기준)에 IPv6 적용을 유도하여 타 사이트 파급효과 극대화
 - 공공부문 IPv6 도입 강화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요 공공기관 IPv6 전환 준비율 제고
- * 6NGIX(IPv6 Next Generation Internet eXchange) : 국내외 ISP의 IPv6 트래픽 교환기
- ※ 금년중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설비에 대한 IPv6 전환수요 조사 및 전환대책 수립

- 국내 네트워크장비 제조사는 '13년까지 100% IPv6를 장비에 적용토록 추진하고, IPv6 네트워크 설계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IPv6 시험인증 획득 유도

2)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o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이 개정('10. 7. 23 공포, '11. 1.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o 주요 내용
 - ①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설정 등(안 제14조, 제14조의2)
 - 낙찰가격의 하한을 의미하는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 특성,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매가 아닌 기준 방식으로 대가할당하는 경우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② 주파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3)
 - 주파수 할당대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은 양 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 ③ 표본검사 대상·비율 및 전수검사 기준 마련(안 제42조의2)
 -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전파 혼·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에 대해 표본 검사를 적용
 - 표본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며, 불합격율이 표본의 15%를 초과할 경우 전수검사 실시
 - ④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 기자재 유형에 따른 인증제도[형식승인(유선), 형식검정·등록(무선), 전자파적합등록(정보기기)]를 위해 정도에 따른 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적합등록)로 통합함에 따라 적합인증·등록대상의 기준 마련
 - ⑤ 개설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DMB)(안 제21조)
 -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 및 지하·터널내에 설치하는 지상파 DMB보조국의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개설하도록 전환

⑥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안 제44조)

- 홍수 예·경보, 조난구조,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의 성능유지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인명안전 관련 무선국 중 의무항공기국과 의무선박국의 정기검사 주기만 1년이고 나머지는 일반 무선국과 같이 5년이므로 무선국의 성능유지를 위해 검사기간을 단축

⑦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명칭, 출력 및 허가 유효기간 정비(안 제36조, 제57조)

- 소규모 지역밀착형 비영리 방송국인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상의 명칭, 출력 및 허가 유효기간을 방송법과 동일하게 정비
- 명칭을 소출력방송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출력을 1W이하에서 10W이하로,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⑧ 환경친화적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안 별표 8, 9, 10)

-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 전체무선국 중 환경친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10% 감면

⑨ 위성휴대통신(GM-PCS) 전파사용료의 가입자 단가 신설(안 별표 8)

- 현재 위성휴대통신은 일반 무선국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가입자 기반의 다른 기간통신역무와 같이 가입자 수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
- 서비스 성격 및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수준을 고려하여 가입자 단가 신설 (음성·데이터 겸용 500원, 데이터 전용 80원)

⑩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별표 23 내지 28)

- 과태료 부과, 무선국 운영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재차, 삼차 반복되는 경우의 제재기준을 마련함

※ 법제처('08.10월) 및 방통위 규개특위('09.12월) 권고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

-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시 위반 무선국 수의 범위(1~5, 6~10, 11국 이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던 과태료 금액을 위반 무선국 1국당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개선

⑪ 기타(안 제77조의4 내지 14, 제88조 등)

- 그 밖에 적합성평가 변경·면제 절차, 시험기관 지정절차 등 마련,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인력양성 사업 등 추가, 개정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규정체계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아. 기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9. 17(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회 (18:30)

※ 12:25 정회, 17:50 속개